

이웃사랑자유적금 특약

제1조 【적용범위】

이웃사랑자유적금(이하 “이 적금”이라 한다)의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적립식예금 약관과 조세특례 제한법,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예금종류】

이 적금 종류는 적립식예금이다.

제3조 【가입대상】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장기·골수 기증(희망 등록)자, 헌혈자(5회 이상), 입양자, 읍·면단위 지역 거주자로 하며 1인 2계좌에 한 한다.

제4조 【가입기간】

이 적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가입금액】

신규가입시 최저 1만원 이상이며 2회차 이후로는 1원 단위로 적립이 가능하며 최고한도는 1계좌당 3천만원 이하이다.



제6조 【기본이율 및 이자계산】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정기적금의 기간별 이율을 적용한다.

제7조 【우대이율】

신규가입일 현재 이웃사랑자유적금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제8조 【일반 중도해지】

- ① 중도해약 시 1개월 미만 경과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 ② 적금 만기 전 일반 중도해지 할 경우 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에 우대이율을 지급한다.

제9조 【특별중도해지】

- ① 적금 만기 전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한 경우 정기적금의 예치 기간별 만기이율을 지급하되, 가입 후 6개월 미 경과한 예금은 일반 중도해지이율을 지급한다.
- ② 특별한 사유라 함은 아래와 같다.
 1. 계약기간 중 예금주 또는 예금주 배우자의 주택 구입에 따라 적금을 중도 해지 청구한 경우
 2. 계약기간 중 예금주 또는 예금주 자녀의 결혼에 따라 적금을 중도해지 청구한 경우



3. 계약기간 중 예금주, 예금주 배우자 또는 미혼의 자녀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비를 목적으로 적금을 중도 해지 청구한 경우(최소 2주 이상 입원 치료한 경우)
- ③ 위의 각 호의 경우 예금주가 위 사실을 관련서류와 함께 해당사유 발생일 1개월 이내에 우체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과세구분】

일반과세, 세금우대, 생계형저축 가입이 가능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1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